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. 10 선고 2022가단10500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유병연,김정원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11. 29.

판 결 선 고 2023. 1. 10.

## 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30,000,912원 및 그중 13,916,630원에 대하여 2021. 12. 18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.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,  
가. 피고들 사이에 2021. 10. 19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 
나.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의 지연손해금 연 23.7%를 연 24%로 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피고 B은 2006. 11. 2. 주식회사 D(이하 'D카드'라고 한다)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고, D카드로부터 카드로 2015. 12. 31. 1,200만 원, 2016. 8. 11. 1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.

나. D카드는 2019. 4. 3.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과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2019. 9. 11.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.

다. 원고가 양수한 위 각 채권의 내역은 2021. 12. 17. 기준으로, ① 2015. 12. 31.자 카드로 원금 11,999,830원,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,896,490원 합계 25,896,320원, ② 2016. 8. 11.자 카드로 원금 1,000,000원, 이자 및 지연손해금 1,155,289원 합계 2,155,289원, ③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916,800원, 이자 및 지연손해금 1,032,503원 합계 1,949,303원으로서, 총액은 원금 13,916,630원,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,084,282원 합계 30,000,912원이며, 약관에 따라 위 각 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23.7%이다.

라. 피고 B의 부 E은 2021. 6. 14. 사망하였다. 당시 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C, 자녀들인 피고 B, F, G, H가 있었다. 공동상속인들은 2021. 10. 19.경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 C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고 한다)를 하였다.

마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인 각 2/11 지분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, 원고와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회사에 원금 기준 87,987,000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대법원  
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이 법원의 1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 
취지

## 2. 판단

### 가. 피고 B에 대한 청구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피고 B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30,000,912원  
및 그중 원금 13,916,630원에 대하여 2021. 12. 18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.7%의 약정이율로  
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는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, 위 인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 
없으므로 이유 없다.

### 나. 피고 C에 대한 청구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고 B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 
대한 상속지분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행위로서 피고 B의 채권자들을  
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 B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그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.  
또한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/11  
지분에 관하여, 피고들 사이에 2021. 10. 19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수익자인 피고  
C는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B에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 
기각하며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이재은

## 부동산 목록

## 1.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광주광역시 남구 동[도로명주소] 광주광역시 남구 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아파트

1층 내지 4층 각 576.72㎡, 5층 내지 7층 각 565.80㎡,

8층 내지 10층 각 481.38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광주광역시 남구 대 11235㎡2. 광주광역시 남구 대 651.2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8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.42㎡

(대지권의 표시)

1. 2 소유권대지권 11886.2분의 41.343

## 2.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광주광역시 북구 동[도로명주소] 광주광역시 북구 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8층 아파트

1층 694.62㎡, 2층 687.33㎡, 3층 내지 18층 각 678.42㎡

지하1층 656.55㎡

부속건물

조직조 경사 슬래브지붕 지상2층 노인정 및 관리사무소 247.7㎡

조직조 경사 슬래브지붕 지상1층 경비실-1 8.64㎡

조직조 경사 슬래브지붕 지상1층 경비실-2 15.84㎡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1층 기계실, 전기실, 계단실 및 지하

주차장-1 6111㎡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하주차장-2 2995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평주광역시 북구  대 20488.7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0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96.87㎡

(대지권의 표시)

2 소유권대지권 20488.7㎡의 44.852 %를

